

보도일자

2018년 2월 7일(수) 오후 2시 이후

「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」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- 김용태 의원실과 기업지배구조원 공동주최

-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의원실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(원장 조명현, 이하 KCGS)은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“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”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
- 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, 사회책임경영, 환경경영 모범규준을 제정·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, ESG(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) 평가와 주주총회 의안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음
-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 추진배경
 -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‘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’을 발표
 - 발표내용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등 내부 감사기구의 경영진 감시, 통제 강화 등 그 역할과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판단
 -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통과, 10월 공포
 -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: 주기적 지정제(6+3) 도입, 감사인 지정사유 추가 등
 -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감사인의 노력 요구: 표준감사시간 도입,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,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회계법인의 의무조항 신설 등

□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 필요성

-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다시 정립하고, 업무 및 회계 감사 · 감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적극 대응이 필요
 - 감사위원회는 향후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
 - 일부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독책임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형식적 운영
 - 내·외부감사간 기능 연계 불충분해 회계의혹, 내부통제의 허점 등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공유되지 않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 대두
- 이상의 사유로 「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」 제정, 「감사위원회 매뉴얼 · 체크리스트」 작성 등 “표준화된 자율적 기준” 마련 절실
 -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적, 실천적 접근
 - 외부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연결고리 중점 고려
 - 감사위원으로서 역할 수행 가능하도록 모범규준, 매뉴얼, 체크리스트 포함

□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(안)의 고려사항과 특징

- 실무 현장에서 당장 활용 가능
 - 실무에서 활용성 중시, 기업규모에 따른 실행 가능성도 적극 감안
 - 바람직한 방향성과 현장에서 실행 가능성이 조화되는 최선관행 제안
-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
 - 회계제도 개혁 지원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
 - 최소 1인 이상의 회계전문가 참여 관련 의견 반영 (매뉴얼)
-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 강화
 -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구체적인 소통사항, 확인사항, 실행양식 등 체계화 및 예시(매뉴얼)
- (향후) 모범규준 이행수준 평가
 - 감사기구의 운영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정기점검 필요

□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(안) 주요 내용

○ 모범규준의 구성

- 전문, (1)내부감사기구, (2)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, (3)감사위원회 운영, (4)역할과 책임, (5)외부감사인과의 관계, (6)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

○ 내부감사기구

-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권고
-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함

○ 구성, 선임 및 자격 요건

-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사외이사를 권고
- 최소 1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참여가 바람직

○ 감사위원회 운영

- 충분한 회의 시간과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확보
- 분기별 최소 1회 회의 개최 권고
-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 정기적 평가
- 투입시간과 노력,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 수준 결정 (보상위원회)
- 선임 후 입문교육과 지속적인 교육 제공

○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

-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 확보
-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고려사항,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검토 등
-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 평가
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, 리스크 관리시스템 감독
- 독립성, 전문성과 충분한 인원이 확보된 내부감사부서 설치
- 내부신고시스템의 완비
-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, 적절한 후속조치

○ 외부감사인과의 관계

- 외부감사인 선임 전 독립성과 전문성, 징계여부 등 고려
-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
- 재무제표 작성 점검(회사 직접 작성 여부) 검토
- 외부감사결과 검토, 외부감사의견 평가, 외부감사인 평가
 -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사항 관리, 점검

○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

- 이사회와의 의사소통
- 주요 주주 및 주요 채권자와의 의사소통
 - 감사위원장의 주주총회 참석

□ 향후 추진사항

○ 제안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(안)에 관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수렴

- 모범규준 제정 시까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 도출

○ 모범규준의 제정 이후 이에 맞추어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한 후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

- 모범규준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 및 유관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

○ 향후 모범규준 및 세부 매뉴얼 개선에 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개정

-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,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동시에 글로벌스탠더드를 반영하는 모범규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경주

붙임.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(안) 1부

※ 담당부서 및 담당자 : 정책연구본부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(02-6951-3842, jkjeong@cgs.or.kr)